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10.14(화) 10:00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3. 제안 이유

- 자치법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·도민에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실시하고,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일부 개정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명칭 변경 및 규제범위 조정(안 제5조, 제14조)

- 고용센터소장→고용센터직원
- 심사위원회 성별 균형 구성 추가
- 고용심의회→노사민정협의회
- 사업실적,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→사업실적

나.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 삭제(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안 제5조를 개정함은 물론, 동 조례안의 상

위법령인 ‘사회적기업 육성법’ 제19조에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있어 현재 운용중인 조례의 16조를 삭제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